전주시 고시 제2021-46호

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일

전 주 시 장 전주시장의인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붙임

구분		대상 시설
중점관리 시설	집합 제한	▲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▲홀덤펍 ▲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공연장 ▲파티룸 ▲식당·카페
일반관리 시설	집합 제한	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목욕장업 ▲공연장 ▲영화관 ▲PC방 ▲오락실·멀티방 ▲실내체육시설 ▲학원(교습소)·직업훈련기관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놀이공원·워터 파크 ▲이·미용업 ▲백화점·대형마트 ▲상점·마트(300㎡ 이상)

나. 처분기간 : 2021. 4. 2(금) 12시 ~ 2021. 4. 15(목) 24시

다. 시설별·활동별 준수사항 : 붙임

라. 처분이유

-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 , 제4항
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
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3.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운영 중단 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**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**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	▸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▸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공통수칙	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시설 5종, 홀덤펍	▸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▸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노래연습장	▸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▸**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4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**
실내 스탠딩공연장	▸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▸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식당·카페(무인카페 포함)	▸식당·카페 모두 **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** 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▸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	▸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파티룸	▸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▸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
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▸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**8㎡당 1명**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**4㎡당 1명**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**22시 이후 (익일 05시까지)운영 중단**
결혼식장	▸ 개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▸ 개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▸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▸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▸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▸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독서실·스터디카페	▸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▸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▸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▸ 마스크 착용 ▸ 주기적 환기·소독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▸ 마스크 착용

구분		비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	
	숙박시설	▸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▸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▸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▸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	국공립시설	▸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▸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	사회복지이용시설	▸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
	마스크 착용 의무화	▸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	교통시설 이용	▸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	스포츠 관람	▸ 10% 이내로 관중 입장
	등교	▸ 밀집도 1/3 원칙 (고등학교 2/3),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
	종교활동	▸ **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** ▸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	직장근무	▸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*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▸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
참고 문의처 (전주시 처분담당자)

연번	조 치 분 야	부 서		담당자	연 락 처	비고
		시	구청			
1	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	보건복지부 (생활방역팀)		044-202-1721~9		
2	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	시민안전담당관 (사회재난팀)		팀 장 김용운 주무관 장현석 주무관 고승현 주무관 김성준	063-281-2527 063-281-2528 063-281-2529 063-281-2082	
3	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	환경위생과	환경위생과	주무관 최현정	281-2371	시
				팀 장 라희재	220-5437	완산구
				팀 장 강현윤	270-6437	덕진구
4	요양시설	통합돌봄과		주무관 손선희	281-2049	요양시설
				주무관 김선희	281-2065	주·야간보호
5	의료기관(병·의원,약국 등), 요양병원	보건소 보건행정과 (의약팀)		팀 장 황경순	281-6230	
6	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문화정책과	가족청소년과	주무관 장태주	281-2224	시
				주무관 김도현 주무관 설윤정	220-5143 220-5226	완산구
				주무관 길장일 주무관 노수정	270-6224 270-6226	덕진구
7	학원, 독서실, 교습소	(주관)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	행정지원과	주무관 진문승	281-5312	시
		(협조) 교육청소년과	행정지원과			
8	실내체육시설	체육산업과 (시설관리공단)	가족청소년과 (체육도장시설)	주무관 최진영	281-2939	시
				주무관 김도현	220-5143	완산구
				주무관 노수정	270-6226	덕진구
9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청년정책과	경제교통과	주무관 남화영	220-5189	완산구
				주무관 이다움	270-6352	덕진구
10	상점·마트·백화점			주무관 윤선영	281-2397	시
11	직업훈련기관	일자리청년정책과	경제교통과	주무관 유성민	281-2555	시
12	놀이공원·워터파크(물놀이형 유원시설)	관광산업과	가족청소년과	주무관 민경준	281-2814	시
				주무관 김도현	220-5143	완산구
				주무관 길장일	270-6224	덕진구
13	공연장	문화정책과	가족청소년과	주무관 장태주	281-2224	시
14	결혼식장	여성가족과		주무관 김문수	281-5032	시
15	목욕장업	환경위생과	환경위생과	주무관 곽호정	281-2372	시
				팀 장 라희재	220-5437	완산구
				팀 장 강현윤	270-6437	덕진구
16	장례식장	통합돌봄과	가족청소년과	주무관 이은영	281-2673	시
				주무관 박주혁	220-5340	완산구
				주무관 김형석	270-6340	덕진구
17	종교시설	문화정책과	행정지원과	주무관 주정용	281-2680	시
18	대중교통(버스,택시 등)	시민교통과		주무관 이건복	281-2169	시
19	기타시설	인·허가 등 업무 관련 부서				